Ⅰ. 서론

1. 문제 제기

최근 들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노령화 및 핵가족화·소자녀화 현상으로 인하여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로부터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하여 다층 소득보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서 기업연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준비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법정퇴직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내적립제도인 퇴직급여충당금제도가 근로자의 퇴직급여수급권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연금제도로서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행 퇴직금 관련제도와 기업연금제도상의 문제로 기업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기업연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시금을 허용하고 연금관련 규정 등이 미비되어 기업연금제도의 정착을 저해하고 있으며, 퇴직금중간정산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업연금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과다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연금급부에 대하여 불합리한 세제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연금시장이 확대·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 적립비율방식으로 운영되어 기업의 기업연금가입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기업연금가입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고용형태의 변화와 높은 이직률 및 연봉제의 확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업연금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기

업연금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연금시장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퇴직금제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 기업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퇴직금 관련제도 및 기업연금제도의 개선방안과 더 나아가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을 가정한 상태에서 기업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해보고,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기업연금의 활성화방안 및 보험회사의 대응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운용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업연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실제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기업연금의 재정방식 및 근속패턴, 급여수준, 급여상승률, 가입연령, 수익률, 갹출률 등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노후소득의 적정성 등에 관한 연구와 각 기업연금제도간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 법정퇴직금의 기업연금화방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방안 및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김원식 · 이호영(2000)[1]은 퇴직금제도 개선방향으로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기업연금으로 흡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

1) 한국공공경제학회, 『21세기의 국민적 연금체계 구상 : 국민연금의 개혁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2000.11.

이를 위하여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연금화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퇴직금제도가 사실상 확정급부방식이므로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제도가 퇴직금의 연금전환에 가장 용이한 방식이 될 것이며, 확정갹출방식에 입각한 기업연금제도는 사실상 퇴직금제도로부터의 전환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를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문제는 퇴직금제도를 노사합의에 의하여 확정갹출제도로 전환한 후 노사가 합의하는 연금기금을 사내 혹은 사외에 적립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인재(2000)[2]의 경우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혁과 적격기업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였는데, 현행 퇴직금 적용대상 및 수준을 적격기업연금제도의 하한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현행법의 정비방안으로서 기업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기존 법정퇴직금제도에 기초하여 확정급부형의 비갹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즉,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퇴직금제도 수준에서 기업연금제도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현행 퇴직금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위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퇴직금제도를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각 제도 도입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미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제도가 어떠한 발전단계를 거쳐서 선진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연구가 미흡하였으며,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구체적 개선사항과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

2) 「퇴직금제도의 개혁과 적격기업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법적 연구」, 『민주법학』, 제17호, 2000.2.

3. 연구방법

본 보고서는 선행 연구에서 미진한 부문으로 지적된 기업연금의 활성화방안의 제시와 이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헌연구 및 실증분석방법 보다는 현행 퇴직금 관련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및 이에 대한 근거를 찾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인구노령화와 핵가족화·소자녀화의 진전,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등과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향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질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업연금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금 관련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및 실적을 통하여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 정도를 살펴본 후,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기업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 현행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는 퇴직금 관련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및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제도의 정착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을 전제로 할 경우 새로운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경우 도입이 가능한 기업연금제도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설명 및 도입예시를 하고자 한다. 또한 자산운용리스크의 부담측면에서 각 제도별로 근로자와 기업의 리스크부담 정도를 상호 비교하여 바람직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순서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의 보험회사의 대응전략과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으로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연금전문기관화 전략과 시장진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